

부산광역시사하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의안 번호	30
----------	----

제출년월일 : 2000. 8. 23.

제출자 : 사하구청장

1. 제안사유

현행개별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각종 위원회의 기능을 사회복지위원회가 통합운영 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가. 위원회의 기능을 사회복지에 관한 기본계획 및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한 각종사안을 심의 토록 규정
- 나. 위원회의 구성은 구의회 의원,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관련분야 종사자,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법인(단체) 및 시설의 대표자 등으로 12인 이내로 구성토록 함.
- 다. 위원회의 임기는 3년, 공무원이 아닌위원의 회의참석, 업무와 관련한 출장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 라. 위원회 업무 수행중 필요시 관계기관에 대해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관련법령

-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
- 나. 부산광역시사하구구조조정위원회조례
- 다.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 라. 부산광역시사하구복지장학금지급조례
- 마. 부산광역시사하구어린이집관리 및 운영조례
- 바. 부산광역시사하구노인복지기금설치운영관리조례

부산광역시사하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사하구 사회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사회복지 및 생활보호사업에 관한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
2. 새로운 사회복지제도의 도입과 시행
3. 사회복지사업 상호간의 조정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5. 영유아보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6.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7. 저소득주민 전세자금 융자대상자 선정
8.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대상자 선정
9. 저소득자녀 장학금지급 대상자 선발
10. 부랑인 입·퇴소에 관한 사항
11. 기타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사하구청장이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사회산업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사회산업국장,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당해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증진에 열의가 있는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관련분야 종사자

3.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법인(단체) 및 시설의 대표자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당해 위원회를 두는 기관의 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등) ①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사회복지과 사회복지업무담당 주사가 되며, 서기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된다. 다만, 안건의 내용에 따라 업무소관 담당주사와 직원을 간사와 서기로 임명할 수 있다.

③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위원의 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산광역시사하구위원회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9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부산광역시사하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3호 및 제22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목 “위원회 설치” 를 “대상자 선정”으로 하고, 제1항을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용자대상은 사하구사회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서 심의 선정 한다”로 하며, 동조 제2항,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③부산광역시사하구복지장학급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호 본문중 “구정조정위원회”를 “사하구사회복지위원회”로 한다.

④부산광역시사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본문중 “사하구보육위원회(이하 “보육위원회”라 한다)” 를 “사하구사회복지위원회(이하 “사회복지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6조제3항 및 제14조 본문중 “보육위원회”를 “사회복지위원회”로 한다.

⑤부산광역시사하구노인복지기금설치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1호 · 제2호 및 제4항, 제5항,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기금의 운용심의)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은사하구 사회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②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